



# 재해재난 대비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미나



일시

장소

주최·주관

2020.05.20(수)  
오후 2시

동물자유연대  
교육장

동물자유연대

# 세미나 순서

14:00 - 14:05	참석자 소개
14:05 - 14:10	인사말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 발제	
14:10 - 14:30	발제. 현장사례를 통해 바라본 반려동물 안전대책의 문제점과 민관협력모델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
◆ 패널 토론	
14:30 - 14:45	토론 1.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보호관련 정부정책 (김철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14:45 - 15:00	토론 2. 반려동물 재해재난 대책의 해외사례 비교 (김동훈 라이프라인코리아 대표)
15:00 - 15:15	토론 3.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보호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과제 (송시현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15:15 - 15:30	자유토론
15:30 - 15:40	정리/폐식

# 목 차

---

발제. 현장사례를 통해 바라본 반려동물 안전대책의 문제점과 민관협력모델

토론1.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보호관련 정부정책

토론2. 반려동물 재해재난 대책의 해외사례 비교

토론3.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보호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과제

# 발제

---

## 현장 사례를 통해 바라본 반려동물 안전대책의 문제점과 민관협력 모델

---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  
채 일 택

현장사례를 통해 바라본  
반려동물 안전대책의 문제점과 민관협력모델

2020. 5. 20.  
정책팀



I . 재해재난 현장사례 및 동물자유연대 구호활동

# 1. 재해재난 유형별 발생 문제

대규모 재해재난을 겪으며 반려동물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 증대

유형	구분	발생 범위	시급도	발생 문제
자연재난	포항 지진 ('17년)	국소지역 중심	긴급 구호 요구	- 동반 대피 및 구조 - 유실 및 유기 - 동물 보호 및 거취 - 피해동물 치료
	고성 산불 ('19년)			
사회재난	코로나 19 ('20년)	광역 발생	장기화	- 대체 돌봄 인력 문제 - 감염 우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 2. 유형별 현장사례 및 동물자유연대 구호활동

## 사례 1 야산에 묶여있던 고양이 남매, 휴지와 봉지

인위재난

고성산불

긴급구호

### 재난 상황

- 산불로 집이 전소되어 고양이와 함께 대피하였으나,
- 대피소 반려동물 출입 금지되어
- 대피소 주변 야산에 고양이를 묶어 놓고 돌보던 상황

### 동물자유연대 구호활동

- 고양이 건강검진 진행
- 대피소 인근 묘사 설치
- 사료 및 간식 지원



### 안전대책 문제점

- 반려동물 동반 대피시설 부재
- 재해재난시 행동지침 부재

## 2. 유형별 현장사례 및 동물자유연대 구호활동

### 사례2 산불 트라우마로 우울증에 걸린 금비

인위재난

고성산불

치료

#### 재난 상황

- 견사 문을 열어 두고 대피하여 신체적 피해는 없으나
- 산불에 대한 충격으로 트라우마와 우울증 증상을 보임
- 치료 후 호전되어 집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상태가 악화됨

#### 동물자유연대 구호활동

- 건강검진 및 치료 진행
- 외부 시설에서 위탁보호 제공



#### 안전대책 문제점

- 반려동물 동반 대피시설 부재
- 피해 동물에 대한 지원 부재

4

## 2. 유형별 현장사례 및 동물자유연대 구호활동

### 사례3 화상 입은 유기견 인흥이와 용천이

인위재난

고성산불

긴급구호

#### 재난 상황

- 산불로 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채
- 마을회관 인근 펜션에서 발견
- 주인 확인 불가

#### 동물자유연대 구호활동

- 구조 및 보호
- 화상 치료 진행 (인흥이 치료 중 사망)
- 센터 입소 후 입양 진행 (용천이)



#### 안전대책 문제점

- 재해재난시 행동지침 부재
- 반려동물에 대한 구조체계 부재
- 피해 동물에 대한 지원 부재

5

사례4 뜯장에 남겨진 동물들

인위재난

고성산불

긴급구호

재난 상황

- 고성의 한 개농장에서 뜯장에 갇혀
- 화마를 피하지 못해 죽거나 화상을 입은 채
- 그을린 뜯장 안에 남아있었던 상황

동물자유연대 구호활동

- 구조 및 보호
- 화상 치료 진행



안전대책 문제점

- 재해재난시 행동지침 부재
- 반려동물에 대한 구조체계 부재
- 피해 동물에 대한 지원 부재

6

사례5 사료 및 호텔링 비용 지원

사회재난

코로나 19

긴급구호

재난 상황

- 대구 내 급격한 코로나 19 확산되며 자가 격리 급증
- 격리 발생시 반려동물 감염 우려 및 돌봄 문제 발생

동물자유연대 구호활동

- 입원/격리 시 호텔링 비용 지원
- 사료 지원



안전대책 문제점

- 재해재난시 행동지침 부재
- 자가격리시 반려동물 돌봄 문제에 대한 지원 부재 (일부 지자체에 한해 지원)

7



## II .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안전대책의 문제점

8

### 1.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안전대책 현황

동물자유연대

구분	정부	민간단체	시민
1.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	○
2. 재해재난시 대응계획이 있는가?	X	X	확인불가
3. 대응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X	X	확인불가

▶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안전대책 부재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 단계

9

# 1.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안전대책 현황

## 반려동물 대피시설을 비롯, 실효성 있는 행동지침 등 기본적인 안전대책 부재

The screenshot shows the '국민재난안전포털' (National Disaster Safety Portal) website. The navigation bar includes '재난예방대비', '민방위', '중수해보험', '재난심리상담', '재난현황', and '참여와 신고'.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애완동물 재난대책법' (Pet Disaster Response Law). It includes a search bar and a list of disaster response measures for pets, such as '자신의 지역 외부에 거주하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비상시 자신과 애완동물이 머물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and '또한 재난으로 인해 자신이 귀가하지 못할 경우, 애완동물을 돌봐달라고 이웃이나 친구, 가족에게 부탁하십시오'.

**반려동물은 대피소 입소불가와 스스로 대비계획을 세울 것만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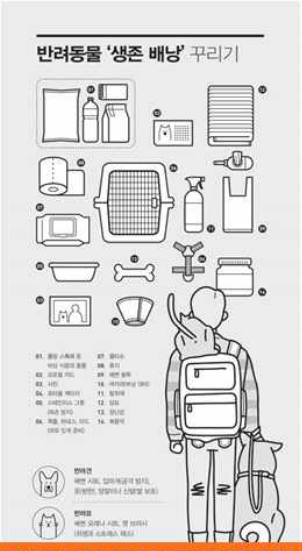
# 1.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안전대책 현황

## 시민들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정보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

### 반려동물과 함께 재난·위기를 맞이한다면?

- 01 **정확한 거주지 확인 '인식표'**
- 02 **반려동물의 최신 주소 '카드 케이지'**
- 03 **가장착한 '출판과 올바른 식습관'**
- 04 **반려동물 '포털 카드와 가족 사진'**
- 05 **안전한 추가 환경의 확보를 위한 '비움'**
- 06 **이웃과의 '커뮤니케이션'**

지도를 비롯하여, 책상, 소파, 화목, 기온 등 실내 온도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이 위험을 제 반려동물은 지킬 수 있는 환경이고, 어떤 환경이 위험을 제 반려동물은 지킬 수 없는 환경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어떤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어떤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제작한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

- **사람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설정,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적 고려 부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람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여, 반려동물 안전 문제는 중앙정부/지자체 등의 책임 및 의무가 아닌 상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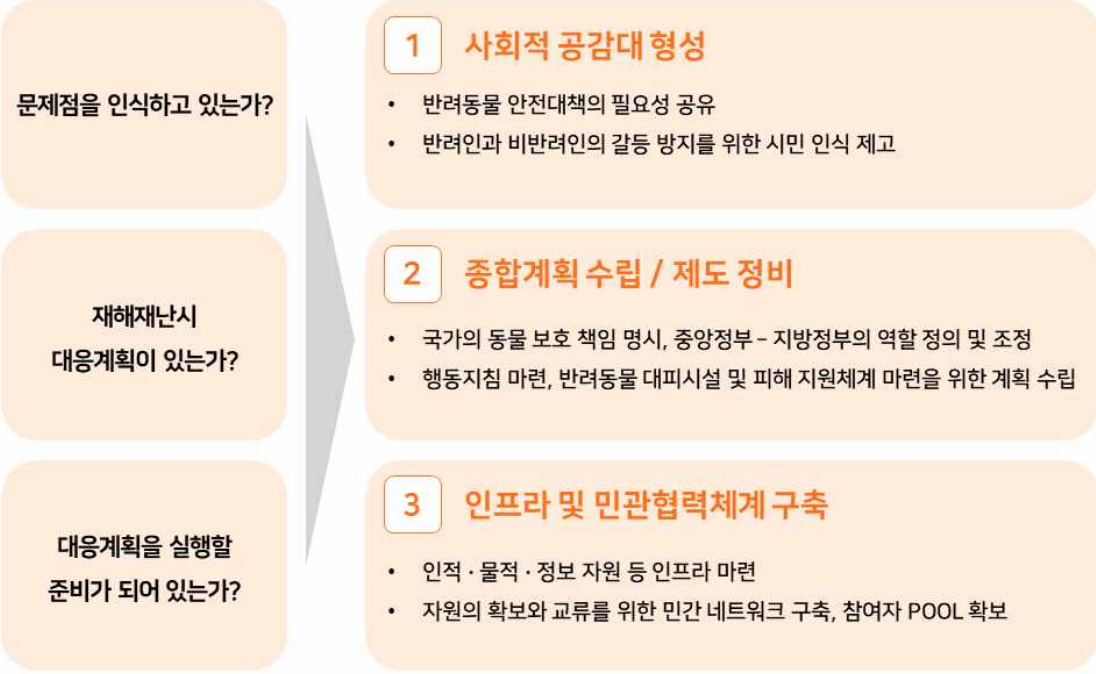
-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 **재해재난시 행동지침 등 정보 제공 부족**

대피시설 內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반려동물 가구의 행동요령(동반 가능 숙박업소, 동물을 남기고 대피할 경우 지침 등)안내, 사전 준비사항 등 기본적 정보 제공 부재

**안전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  
반려동물과 개인의 안전 사이 선택을 요구 받는 재난상황 속  
**반려동물의 안전문제는 동물만이 아닌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 공유**

### III.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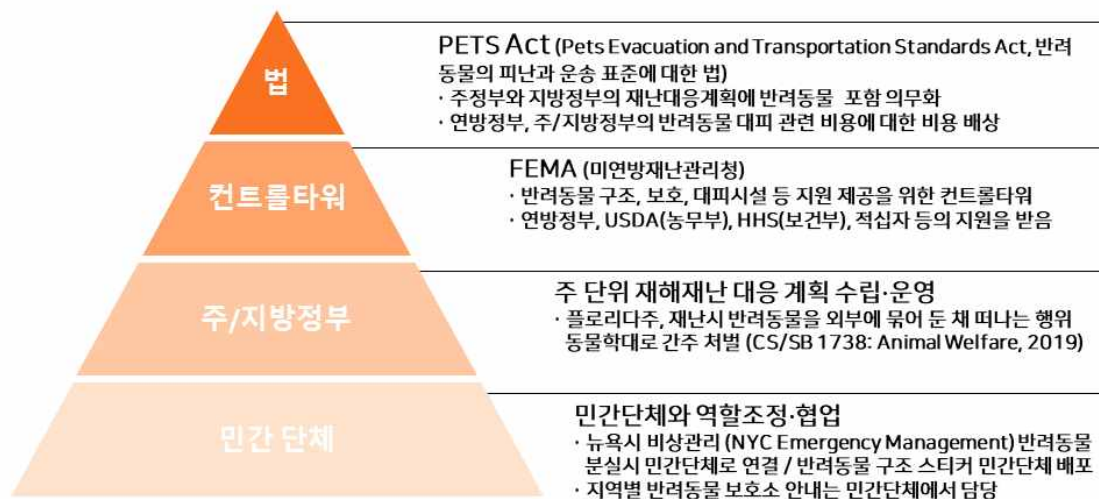
- 1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정부**
    -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피해사례 파악
    - 반려동물 안전대책의 필요성 부서간 공유
    -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방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 및 안내
  - 시민 단체**
    -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안전대책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 해외 사례 통한 안전대책 제언, 구호활동 홍보
  - 시민**
    -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 및 의견 개진
    -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반려인의 책무 이행

2 종합계획 수립 / 제도 정비

- 정부**
  - 국가의 동물 보호 책임 의무화, 재난대응체계에 반려동물가구와 반려동물을 포함
  - 행동지침 마련, 반려동물 대피시설 등 안전망 구축을 포함한 종합계획의 수립
  - 중앙정부 - 지방정부의 역할 정의 및 조정
- 시민 단체**
  - 단체 간 사전연대체 구성
  - 긴급구호 필요상황 발생시 대응 매뉴얼 마련
  - 기존 구호사례 공유 및 복기 통한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논의 / 제언
- 시민**
  - 입법 및 조례 제정 요구
  - 입법 및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사례 : 미국의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대응체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3. 실행대비: 인프라 및 민관협력체계구축

#### 정부

- 인적·물적·정보 자원 등 실행 인프라 마련
- 자원의 확보와 교류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 시민 단체

- 단체 간 민간 네트워크 구축
- 매뉴얼에 따른 긴급구호 물자 및 인력 배치 준비
- 행동지침 제작, 동물 구조 및 치료, 대피시설 설치 및 보호 등 조력 가능 분야 정비

#### 시민

- 재해재난시 기본 행동요령 숙지
- 재해재난 대비 물품 준비(예: 반려동물 생존배낭)
- 반려동물 대피소 위치 및 관련기관 연락처 등 정보 확인

18

### 민관 협력체계의 필요성

####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자원의 한계

- 양상이 다양해지는 재난 상황을 정부 부문에서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 한계 존재
- 각 분야별 현장 대응력이 높은 단체·협회 등 민간의 노하우 활용 가능
- 한정된 자원 속 재난대응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체계 필요

#### 시민의 재난대응주체로의 성장 필요

-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행정만이 아닌 시민의 참여가 중요
- 시민사회, 지역 주민이 각 지역의 안전대응체계의 주체가 되어야 즉각적·효율적 대응 가능

19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모델 (안)

행동지침 마련

- 중앙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 수의사협회
- 동물운동단체

임시 대피시설 마련

- 지자체 부지확보, 수요 파악, 안내
- 동물운동단체 임시시설 마련



치료 및 지원

- 지자체 지역 수의사플 파악
- 지역 수의사회 피해동물 지원
- 적십자사 대민지원물품 내 긴급물품(사료 등) 포함

위기동물 구조

- 지자체 1차 신고 접수
- 지역 소방청 탄력적 대응
- 동물운동단체 구조 지원

1. 재난상황대비 행동지침 마련

- 재난 유형별 / 단계별 / 구체적 상황별 행동 지침 제작

	행동지침의 유형	고려 필요 사항
재난 유형	산불, 지진, 전염병(코로나 19) 등	<input type="checkbox"/> 반려동물 동반 대피시설 및 장소 <input type="checkbox"/> 반려동물 긴급키트 구성방법 <input type="checkbox"/> 대피시설 내 행동지침 <input type="checkbox"/> 대피가 어려운 경우 행동지침
재난 단계	재난 발생 전, 발생 시, 발생 후, 재난상황 종료 후 등	<input type="checkbox"/> 반려동물 응급처치 요령 <input type="checkbox"/> 반려동물 분실시 행동요령
재난 상황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반려동물만 집에 두고 대피한 경우, 반려동물 분실시 등	<input type="checkbox"/> 반려동물 분실시 행동요령

1. 재난상황 대비 행동지침 마련

[참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www.cdc.gov/healthypets/emergencies/index.html>

**Before an Emergency**

To get started,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types of disasters that could affect your area and consider your options for providing care for your pets.

Disasters can happen without warning, so be prepared:

- Make sure your pets wear collars and tags with up-to-date contact information and other identification.
- Microchip your pets) - this is one of the best ways to ensure that you and your pet are reunited if you are separated. Always be sure to register the microchip with the manufacturer and keep your contact information up to date with the microchip company.
- Keep a leash and/or carrier near the exit.
- Make sure you have proper equipment for pets to ride in the car (carriers, harnesses, pet seatbelts).
- Prepare a Pet Disaster Kit: evacuation will go smoothly for your entire family. Ask your veterinarian for help in putting together your pet's veterinary records.

**Make a Plan**

- Plan where you and your pet will stay in case you need to evacuate your home. Pets may not be allowed in local shelters, unless they are service animals. Many disaster evacuation centers (such as Red Cross evacuation centers) do not accept pets and other animals.
  - Identify shelters or out-of-town friends or relatives where your pets and other animals can stay.
  - Locate boarding facilities or animal hospitals near your evacuation shelter and in the case you are unable to return home right away.
- Create a buddy system in case you're not home during an emergency. Ask a trusted neighbor who can check on your animals and can evacuate your animals if necessary.
- Locate a veterinarian or animal hospital in the area where you may be seeking temporary shelter and add the veterinarian's contact information to your emergency kit.

**PET DISASTER KIT CHECKLIST**

**DOCUMENTS**


- Photocopied veterinary records
- Rabies certificate
- Vaccinations
- Medical summary
- Prescriptions for medications
- Most recent heartworm test result (dog)
- Photocopied registration information (ie. proof of ownership or adoption records)
- Pet descriptions (ie. breed, sex, color, weight)
- Recent photographs for each of your pets
- Waterproof container for documents
- Microchip information (ie. microchip number, name and number of the microchip company)
- Your contact information (phone numbers and addresses for your family and friends or relatives you may be staying with)

**WATER, FOOD, MEDICATIONS**

- 2-week supply of food for each animal stored in waterproof containers
- 2-week supply of water for each animal
- Non-spill food and water dishes
- Manual can opener
- Feeding instructions for each animal
- 2-week supply of any medications (if applicable)
- Medication instructions (if applicable)
- One month supply of flea, tick, and heartworm preventative

**OTHER SUPPLIES**

- Leash, collar with ID, and harness
- Toys
- Appropriate-sized pet carrier with bedding, blanket, or towel
- Pet first aid book and first aid kit
- Cleaning supplies for accidents (paper towels, plastic bags, disinfectant)



1. 재난상황 대비 행동지침 마련

[참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구분	주요 내용
재난 발생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동물 동반 재난 대비 <b>모의 훈련 실시</b> (동반 이동 가능한 교통수단 알아보기 등)</li> <li>- 반려인이 집에 없을 상황에 대비해 이웃 혹은 지인이 반려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할 것</li> </ul>
재난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외에 <b>반려동물을 묶어 둔 채 보호자만 대피해서는 안됨</b> (플로리다주, 동물학대 간주<sup>1)</sup> 처벌)</li> <li>- 대피소 내 목줄 또는 이동장 필수, 입소 시 접종 내역 증명 필요</li> <li>- 집에 머물 경우 창문이 없거나 적은 방이 더 안전, 놀란 동물이 숨을 수 있는 통풍구나 좁은 틈은 미리 막아둘 것</li> </ul>
재난 발생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동물 <b>분실 시</b> 연락을 취할 수 있는 <b>지역 관할 기관, 동물보호단체 등 안내</b></li> <li>- 부상 당한 반려동물을 대하는 방법 안내 (매우 순한 동물이라도 부상을 입었다면 물거나 할릴 수 있음)</li> </ul>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2. 반려동물 임시 대피시설 마련

- 현실적으로 설치가 쉬운 반려동물 임시 대피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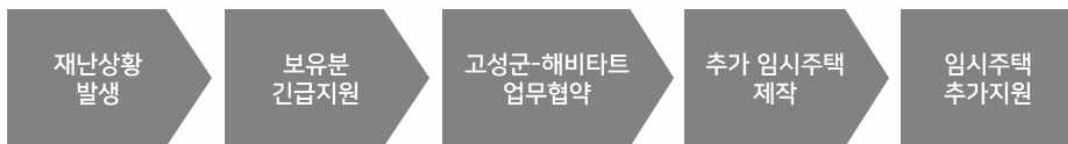
구분	내용	발생 문제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피시설 지정	- 기존 대피시설 중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시설의 지정 - 시설 내 구획 분리를 통한 반려동물 보호	-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문제 - 반려동물 동반 부적합 환경
기존 동물보호센터 내 보호	-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 내 반려동물 보호	- 포화상태로 추가 보호의 어려움 - 보호자 부재 및 인수 거부
반려동물 별도 임시 대피시설 마련	- 설치가 쉽고 별도 인프라가 필요없는 임시 대피시설의 설치	- 자원 및 설치 부지 확보의 문제 - 자재보관 및 이동 - 대피시설 내 관리 인력의 문제 - 보호자 부재 및 인수 거부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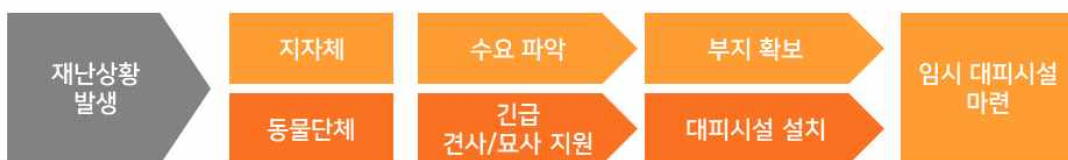
2. 반려동물 임시 대피시설 마련

- 민간 협업을 통한 반려동물 임시 대피시설의 마련 및 공급 가능

한국해비타트 **Habitat for Humanity** Korea 주거 지원 프로그램 - 고성산불 지원 사례



동물자유연대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임시대피시설 지원 프로그램 (안)**



25

3. 재난상황 가정 모의 훈련 실시

- 재난대응 대응체계 점검, 동물의 긴급 구조 및 임시 대피시설의 마련 등 모의 훈련 진행



영국 Kent&Medway

- 지역의회-RSPCA-DEFRA-소방당국 등 관련 주체의 역할과 책임 규정
- 재난상황 가정 모의 훈련 실시

모의훈련 및 워크샵

- 특정 재난상황 가정 (홍수, 산불 등)
- 동물 긴급구조 상황 및 임시 대피시설 수요 발생시 가정
- 지자체-민간 간 연락체계 점검
- 필요 인력 및 자재, 물품 등 점검
- 재난상황 전달 - 동물보호 및 피해대응까지 전과정 훈련
- 보완 필요사항 피드백

9. Training and Exercises

Training should reflect the need to respond to animal welfare issues in emergency situations. It is essential that animal welfare issues are integrated into the exercising regime for all emergency response and recovery exercises.

Training/Exercise	Where/When	Aim/Objectives relevant
Exercise WADE	9 <sup>th</sup> December 2014 Tonbridge and Malling Council	Flooding
DEFRA Workshop	29 <sup>th</sup> January 2015 Gravesham Borough Council - The Woodville	East Coast Flooding
Rest Centre 1 & 2 Training run by the Kent Resilience Forum	TBC	Covering Animal welfare issues as well as Pet Documentation
Rest Centre Care Supervisors	TBC	

감사합니다

# 토론 1.

---

##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보호관련 정부정책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김철기

## 재난 대비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 토론회(동물복지정책과)

-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 관련 법령 및 계획 상 반려동물에 대한 대피, 구조에 대한 고려 필요
  -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대책 수립 필요
    - \* (미국) 각 주가 사람과 동물을 함께 수용하는 긴급대피 계획 수립 시 FEMA(Federal Emergenct Management Agency)의 장기 대피시설 등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일본) '16년 8월 환경성에서 「방재업무계획」에 동물에 관한 사항 마련
- 우리 부는 재난 상황 발생 시 동물대피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물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 일반인·지자체가 재난 상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대피 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21)
    - 재난 발생 시 지자체와 일반 국민 대응요령 및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입장이 가능한 숙박시설,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시설(위탁관리업 등) 정보 제공
  - 「동물보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에 재난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신설 검토(협의 추진)
    - \* 장애인기본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관계부처 협의와 별도로, 해외사례 검토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충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일시 구호 가이드라인 등 마련 검토
  - 재난상황 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마련 의무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 역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 토론 2.

---

### 반려동물 재해재난 대책의 해외사례 비교

---

라이프라인 코리아 대표  
김동훈

[토론]  
**반려동물 재난위기대책 살펴보기**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



라이프라인 코리아  
**LIFE-LINE  
 KOREA**

재난안전 소셜벤처  
 (주)라이프라인코리아  
 (Life-line Korea)

2020. 05. 20

**김동훈 대표** (라이프라인코리아, 재난안전소셜벤처/예비사회적기업)



국제개발, 긴급구호, 사회복지 21년차

- Peace Winds Japan (재난구호/동물복지NGO)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
- \* 현. 행안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2000년



남아시아 쓰나미



인니 족자지진



강릉수해복구



필리핀 태풍 하이옌



네팔 대지진

2020년



강원도 산불



세월호 참사



# 문제시작

## "반려견도 가족인데"...포항지진 대피소 '갈등'

기사입력 2017.11.18 오전 7:00  
최종수정 2017.11.18 오전 10:47

1,812 4,072 [카](#) [인](#)



경북 포항지진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흥해읍 실내체육관에서 이재민들이 추위와 지진 공포 등에 이증고를 겪고 있다.2017.11.1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자연재난으로 갈 곳도 없는데 우리 루시오 같은 강아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주마음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국민청원 및 제안(22)

더보기

### 반려견,반려묘등의 반려동물을 대피소 등으로 데려갈수있게해주세요

[청원시작 : 2018-06-16] [청원마감 : 2018-07-16]  
[청원인원 : 13]

... 좁은 케이지에,다시만나지못할수도있는데, 내 가족이 죽을수도있는데. 만약 자연재해나 전쟁이 났다면 이 ...

HOME >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

### 재난 발생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공간 마련이 시급합니다

[청원시작 : 2017-12-19] [청원마감 : 2018-01-18]  
[청원인원 : 538]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의 경우 재난 발생시 그저 이동장에 의지한 채 ...

HOME >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



## 국민재난안전포털

### 우리집안전점검

### 애완동물 대처방법

애완동물 대처방법

이동

< 이전화면

애완동물 소유자들은 가족 재난계획에 애완동물 항목을 포함시키십시오.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용 동물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대피할 경우를 대비해 애완동물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신의 지역 외부에 거주하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비상시 자신과 애완동물이 머물 수 있는지

또한 재난으로 인해 자신이 귀가하지 못할 경우, 애완동물을 돌봐달라고 이웃이나 친구, 가족에게 부탁하십시오.

· 비상사태 기간 동안 담당 수의사나 조련사가 동물을 위한 대피소를 제공하는지 알아보십시오.

· 재난기간에는 애완동물을 운반용기에 넣어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애완동물에게 보다 안정감을 주고 안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애완동물이 숨는 장소를 알아두면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았을때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재난기간에 애완동물을 다른사람에게 맡기거나 대피소로 보내는 경우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세요.

- 물, 사료와 운반용기
- 목줄, 입 마개
- 최근 집중한 모든 백신과 건강 기록
- 애완동물을 위한 약품(필요한 경우)
- 애완동물 운반용기나 우리(화력 운반기에 바뀌를 달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 오물 수거용 비닐 봉지
- 애완동물의 사진

### 정부 재난대응지침 갱신



반려동물동행피난훈련



반려인/반려동물보호쉼터 지정과 운영

## 반려동물

[반려동물] 동물 없는 재난 대응 대책, 재난 시 동물은 어디에?

동물자유연대 / 2020.01.08 15:51

지난 해 9월 시작된 호주 산불이 5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의 기세는 점점 더 거세져 이미 서울의 100배에 달하는 면적을 불태웠으며 호주 산불의 연기가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칠레에 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피해 뿐만 아니라 최소 24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산에 살던 수많은 동물들도 화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 5억 마리의 동물이 죽었고 산불로 인해 코알라의 멸종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캥거루, 코알라 등 산속에 사는 동물뿐

## 재난 위협은 사람, 동물 가리지 않아..반려동물 위한 재난 대응 대책 마련해야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오늘 날, 반려동물을 포함한 재난 대응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난 대응 대책에는 재난 발생 전-발생 시-발생 후 단계에 따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반려인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이 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 설치, 반려동물 용 구호용품 지급, 반려동물 재난피해 지원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에 남겨진 동물을 위한 구조를 위해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회와 같은 민간영역과의 협력도 요구됩니다.

국가	대표 관할 부처	특징
호주	호주 정부(EMA) 빅토리아주 소방당국(CFA) 뉴사우스웨일스주 산불방제팀(NSW RF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상황 별 대처 요령 안내</li> <li>외국인들 시점으로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갈 때에는 반려동물 용 구호품을 미리 지급</li> <li>비상 시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갈 때에는 반려동물 용 구호품을 미리 지급</li> <li>집에 남겨진 반려동물을 구조하는 단체 존재</li> <li>이웃사</li> <li>피난처 고충상담 및 대피소에 반려동물과 동반 가능</li> </ul>
일본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대비 요령을 예방 단계부터 재난 발생, 대피, 피난처에 이르기까지 7단계로 나누어 자세한 설명</li> <li>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피난처에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한 경우,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있을 때 등으로 나누어 행동 지침 설명</li> <li>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피소 설치</li> </ul>
미국	미국연방인간서비스관리청(FE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나 열, 도끼질, 헬스틱 등과 같은 다양한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지침 존재</li> <li>피난처 내에서는 분무기를 켜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당부</li> <li>별은 달은 양이 울어 울어도 좋다 등</li> <li>반려동물 동반이 불가능한 대피소의 경우, 반려동물은 보호소나 따로 마련된 동물 쉼터 대피소로 가 재난 상황이 끝난 후 반려인과 함께 복귀할 수 있음</li> <li>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피소 설치</li> </ul>
한국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피소에 반려동물 동반 불가</li> <li>담당 수의사나 조련사가 동물을 위한 대피소를 제공하는지 반려인이 직접 물어보도록 권장</li> <li>재난 지역 정부에 거주하는 친구나 친척에게 비상시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그곳에 머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권장</li> <li>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있을 시에 대한 대처 요령 구체화 필요</li> </ul>

[표1] 각 나라 별 반려동물 재난 대피 매뉴얼

### 국가별 정부 정책

### 주요 특징

- |    |                                                                                                                                                                                                                                                                  |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피소 마련</li> <li>반려동물과의 이동을 고려한 재난대비 모의 훈련</li> <li>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안내</li> <li>주 별 반려동물 재난 대응 관련 법 마련</li> <li>민간 동물보호단체와의 협업</li> <li>플로리다 주: '인공재해 및 자연재해 발생 시 개를 묶은 채' 외부에 두는 행위를 1급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제정</li> </ul>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피소 마련</li> <li>동물 축종 별 대피 요령 마련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 소, 말과 같은 큰 동물 / 동물원 동물 / 농장동물 / 특수 동물)</li> <li>반려동물과의 이동을 고려한 재난대비 모의 훈련</li> <li>민간 동물보호단체와의 협업</li> </ul>                                               |
| 호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피소 마련</li> <li>재난 단계별 지침 존재 (재난 발생 전-발생-후)</li> <li>산불 시 비교적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침 마련 (위험 증상, 반려동물을 열로부터 보호하는 법)</li> <li>집에 남겨진 반려동물을 구조하는 단체 존재</li> <li>민간 동물보호단체와의 협업</li> </ul>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피소 마련</li> <li>재난 단계별 지침 존재 (재난 발생 전-발생-후 등 총 7단계)</li> <li>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왔을 때 행동 지침</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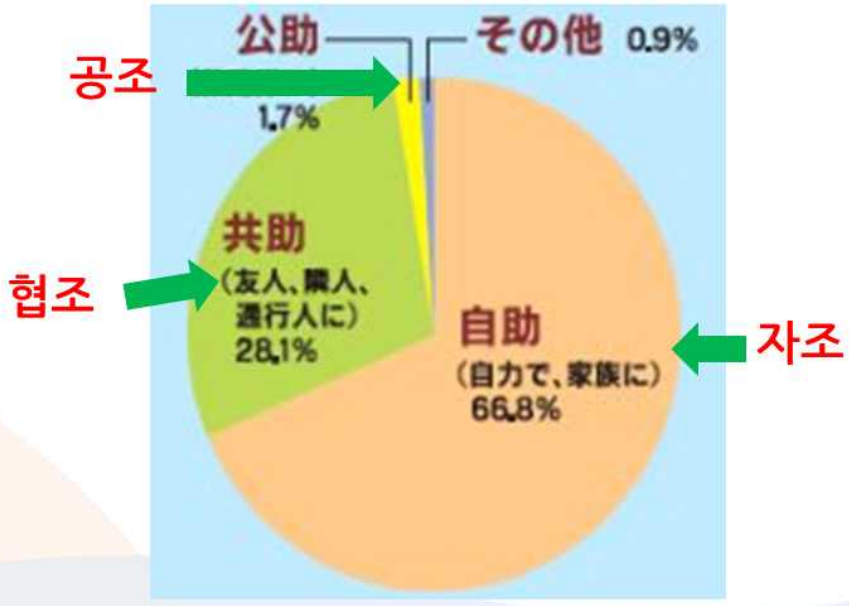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재난 시 반려동물 안전 대책>

**대피소-법제도-교육훈련-세부지침-민관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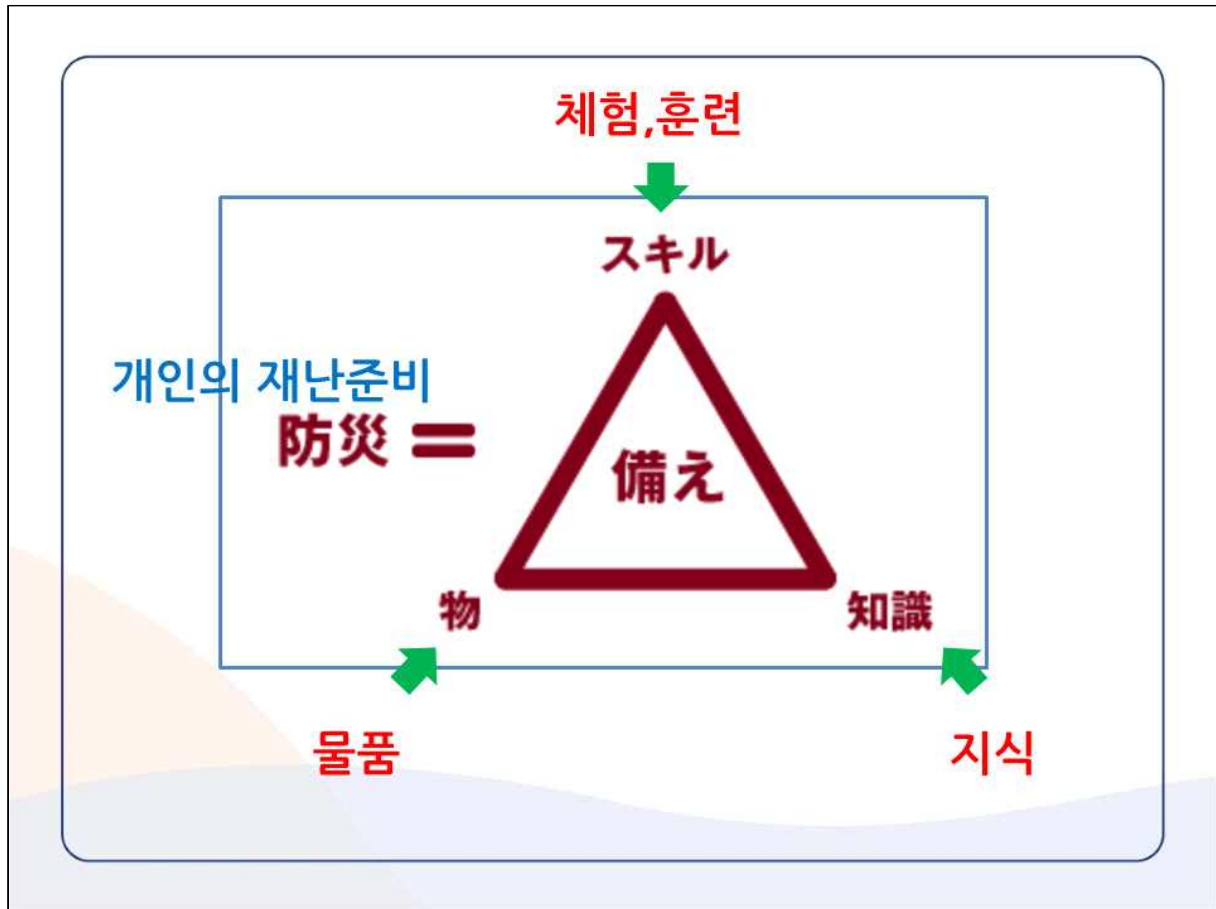
## <재난현장 이해하기>

고베대지진 당시 누구에 의하여 구출되었나?



## <사회적 피해 이해하기>





## 일본의 반려동물방재대책의 기본구조

### <제도>

-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방재기본계획' 수립.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방재업무계획'을 수립
- 한국의 지자체에 해당하는 '도도부현'은 '지역방재계획'을 수립
- '환경성'의 '방재업무계획'은 지자체의 반려동물관련 '지역방재계획'에서의 작성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해 둬.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가이드라인 (2013년 제정, 2018년 개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자체들은 이를 참조하여 자체적인 매뉴얼과 대책을 만들
- 이외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들이 '동물보호관리추진계획'을 정하면서 재해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실행>

- 기본적으로는, 재해발생시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재난자원봉사센터'로 전환. 다양한 구호사업의 하나로 동물관련기관들과 함께 대응
- 적극적으로는, 재해발생시 지자체와 해당지역 수의사협회가 중심이 된 '동물구호본부'를 설치하고 지역 내 동물구호사업을 총괄
- 동물구호와 관련된 민간기관들은 '지자체', '재난자원봉사센터', '동물구호본부' 등 현지 사정에 따른 통로를 활용하여 지원활동
- 평시에 지자체간, 지자체-기관 간 등에 재해지원협정이 활성화되어있음





## ANIMAL SHELTERING

### 재난 대비 훈련-노스 캐롤라이나 주 샬럿

미국 휴 메인 소사이어티



HSUS의 Anthony Rathbun / AP 이미지 사진

날짜: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시간: 오전 10시-오후 4시 (등록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

## 災害時 動物避難所 開設訓練



doit.life

로그인

Do IT

실제 커뮤니티, 실제 경험 및 실제 생활을 위한 연결, 수행

우리의 사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업데이트: COVID-19

IT 부서는 어려운 시기에 영국인과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제공하고 조직과 개인이 필요한 도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연결 및 가입

난 도와주고 싶어요



도움을 제공하여 지역 자선 단체 지원

도움이 필요해



지역 자선 단체 및 자원 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Doit

## 재난당국의 과제

- 긴급대응을 위한 수의팀 구성
- 동물대피소 설치 or 지정
- 동물구호에 관한 지침과 체계 마련
- 기존 매뉴얼, 교육훈련에서의 내용 통합
- 동물구호의 자원 준비
- 동물방재코디네이터 양성 지원
- 민관,민민협력관계 구축



인간과 반려동물의 통합방재를 준비하는

**(주)라이프라인코리아**



Facebook.com/solution4protection

김동훈 대표 010-2748-0506

protection1@life-line.network

## 토론 3.

---

#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보호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과제

---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송시현

#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보호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와 입법 과제

송시현 변호사

## 목 차

1. 관련 법령
2. 사례 살펴보기
3. 입법과제

## 관련 법령 현황

##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보호 관련 법령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동물 보호 관련 내용 없음

### 동물보호법

-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보호 관련 내용 없음

### 재해구호법

- 동물 관련 내용 없음



##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보호 관련 법령 현황

### 국민재난안전포털 애완동물 재난대처법

애완동물 소유자들은 가족 재난계획에 애완동물 항목을 포함시키십시오.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용 동물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대피할 경우를 대비해 애완동물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신의 지역 외부에 거주하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비상시 자신과 애완동물이 머물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 또한 재난으로 인해 자신이 귀가하지 못할 경우, 애완동물을 돌봐달라고 이웃이나 친구, 가족에게 부탁하십시오.

· 비상사태 기간 동안 담당 수의사나 조련사가 동물을 위한 대피소를 제공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재난기간에는 애완동물을 운반용기에 넣어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애완동물에게 보다 안정감을 주고 안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애완동물이 숨는 장소를 알아두면 동물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재난기간에 애완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대피소로 보내는 경우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세요.

- 물, 사료와 운반용기
- 목줄, 입 마개
- 최근 접종한 모든 백신과 건강 기록
- 애완동물을 위한 약품(필요한 경우)
- 애완동물 운반용기나 우리(화학 운반기에 바퀴를 달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 오물 수거용 비닐 봉지
- 애완동물의 사진

##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보호 관련 법령 현황

### 국민재난안전포털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옥내대피 및 소개 시 행동요령

· 비상 내용을 인지하였을 때의 행동요령

- 외출을 삼가고 집안이나 콘크리트 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옥내대피하고 기밀성을 유지하고, 유아, 아동, 임산부, 노약자를 우선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옥내대피 및 소개 안내를 받았을 때의 행동 요령

- 전기, 가스, 수도 등에 안전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을 절대로 지참하여서는 안되며, 애완동물 동반을 금지합니다.

- 가족은 가급적 밀폐된 장소에 수용하고, 가족사료는 밀폐된 장소에 수용 또는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살펴보기

보호자 등에게  
위기상황에서  
동물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 동물보호법

###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벌칙, 과태료 등 제재 없음

###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벌칙, 과태료 등 제재 없음

## 동물보호법

### 제8조(동물학대등의 금지)

-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재난 재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보호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유기(遺棄)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국민재난안전포털 애완동물 재난대처법

- 애완동물 소유자들은 가족 재난계획에 애완동물 항목을 포함시키십시오.
-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봉사용 동물만 허용합니다.)
- 재난으로 인해 자신이 귀가하지 못할 경우, 애완동물을 돌봐달라고 이웃이나 친구, 가족에게 부탁하십시오

→ 강제성 없음

## 위기 상황에서 버려진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타인의 사유지에 들어 갈 수 있을까?

## 어떤 문제가 있을까?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2조(긴급피난)

-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절도죄,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으려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바 없고, 사전 통지 등의 조치 또한 취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관할 관청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면 그렇게 할 생각은 있으나 이 사건 동물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은 전혀 없고, 반환할 것이었다면 애초부터 강제로 이 사건 동물들을 구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④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동물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점유·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동물들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당시 이 사건 동물들에 대한 먹이공급 상태 및 위생 상태가 불량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동물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않고, 이 사건 무렵 위 동물들을 촬영한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동물들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단으로 이 사건 동물들을 취거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가볍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노3953 판결)

## 절도죄,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으려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바 없고, 사전 통지 **구조 후 관할 관청에 신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면 그렇게 할 생각은 있으나 이 사건 동물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추후 소유자에게 반환** 면 애초부터 강제로 이 사건 동물들을 구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④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동물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점유·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동물들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당시 이 사건 동물들에 대한 먹이공급 상태 및 위생 상태가 불량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동물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않고, 이 사건 무렵 위 동물들을 촬영한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동물들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법절차를 **재난 재해 - 긴급한 상황** 행과 같이 무단으로 이 사건 동물들을 취거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가볍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노3953 판결)



소유자 동의 없이 동물을  
구조한 경우에  
구조동물의 치료비 등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

###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①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

## 요건

### 1. 본인의 의사에 적합한 관리

- 사무관리 성립
- 본인의 실제 혹은 **추정적 의사**에 적합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환범위 제한됨 (민법 제739조 제3항)

→ 동물의 소유자의 실제 혹은 추정적의사가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하는 것이었다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 비용 지출

-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 지출
-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됨
- 관리자가 선관주의에 따라 필요비를 지출하면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은 때에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비용이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치료비는 필요비적 성격에 가까워 보임.

→ 동물의 치료가 실효성이 없었더라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김용담, 주석 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362-367

## 주인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구조한 경우

# 주인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구조해도 될까?

## 주인 없이 배회하는 동물?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 유실·유기동물

(동물보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유실·유기동물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구조, 보호조치 대상**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

##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한 경우

- 발견시 우선 인식표, 마이크로칩 등 확인하여 소유자 유무 확인 필요
-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구조한 후 발견된 곳 인근에 전단지 붙이기, SNS, 유기동물찾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최대한 반려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조 동물의 주인이 나타나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 제3자에게 입양 보낸 경우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조한 사람이 키우는 경우

유실물법 제12조(준유실물)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실(逸失)한 가축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물보호법 제17조(공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입법과제

## 동물 구호 물품 제공, 임시 대피시설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예시>

###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등)

-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반려동물 관련 긴급물품 제공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구호의 방법 등)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의 경우 별도의 임시시설에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 동물 구조, 치료비 지출, 소유권 취득 등 관련 입법

- 사인의 동물 구조 및 치료비 지출, 소유권 취득 등과 관련하여 입법적 공백 존재
- 현행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서는 지자체장의 동물 반환, 보호비용의 부담,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인이 동물을 구조한 경우의 동물 반환, 보호비용 부담, 소유권 취득에 대한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시>

-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 구조자가 실제로 지출한 동물의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동물 구조자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가 동물 구조자에게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동물 구조자가 동물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 소유자가 동물 구조자에게 보호비용 청구 후 00일이 지난 후에도 보호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동물 구조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자가 0년(또는 0개월) 동안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동물 구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감사합니다



---

재해재난 대비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미나

---